



제 437회 국회 (임시회)
제 2차 국회운영위원회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거짓 보고 또는 서류등 제출 처벌〉

■ 정을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120호)

2026. 7.

국회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경호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정을호 · 차지호 · 손명수 · 한민수 · 윤종균 · 위성곤
권칠승 · 이기현 · 문정복 · 허 영 의원(10인)

2. 제 안 일 : 2026. 1. 16.

3. 회 부 일 : 2026. 1. 19.

※ 의안번호 : 1612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국가기관이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주무부장관에게 출석하여 해명하도록 하거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도 해명 요구 등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서류 제출 요구를 거부한 자와 달리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서류 등을 제출한 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벌칙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이에 국회의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 받은 국가기관, 공공기관, 공직

유관단체 등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도록 하고,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서류 등을 제출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권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및 제12조제1항).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① 재량사항인 서류등 제출 거부 등에 대한 조치요구를 의무사항으로 변경하고, ② 국회로부터 보고 또는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받고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서류등을 제출한 자를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및 제12조제1항).

[표-1]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의2(서류등의 제출 거부 등에 대한 조치요구) 국회는 제2조에 따라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국가기관이 제4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이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때에는 본회의 또는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주무부장관에 대하여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해명하도록 하거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u>요구할 수 있다.</u>	제4조의2(서류등의 제출 거부 등에 대한 조치요구) ----- ----- ----- ----- ----- ----- ----- ----- <u>요구하여야 한다.</u>
제12조(불출석 등의 죄) 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 고의로 출석요구서의 수령을 회피한 증인, <u>보고 또는 서류 제출 요구를 거절한 자,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이나 감정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u>	제12조(불출석 등의 죄) ① ----- ----- ----- ---- <u>보고 또는 서류 제출 요구를 거절한 자,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서류등을 제출한 자,</u> ----- -----

현 행	개 정 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현행 「국회법」 제128조¹⁾ 및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²⁾는 본회의나 위원회 등은 안건의 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직접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등의 제출을 정부, 행정기관, 관계인 등에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현행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국회증언감정법”이라 함) 제2조³⁾는 보고 또는 서류등의 제출 요구를 받은 때에는 누구든지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국회증언감정법 제4조의2⁴⁾는 서류등의 제출 요구를 받은 국가기관이 이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때에는 주무부장관에게 본

- 1) 「국회법」 제128조(보고·서류 등의 제출 요구) ① 본회의,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직접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와 해당 기관이 보유한 사진·영상물(이하 이 조에서 “서류등”이라 한다)의 제출을 정부, 행정기관 등에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가 청문회,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와 관련된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할 수 있다.
- 2)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 위원회, 제5조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 또는 받은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그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와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등의 제출을 관계인 또는 그 밖의 기관에 요구하고,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고 검증을 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가 감사 또는 조사와 관련된 서류등의 제출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할 수 있다.
- 3) 국회증언감정법 제2조(증인출석 등의 의무) 국회에서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보고와 서류 및 해당 기관이 보유한 사진·영상물(이하 “서류등”이라 한다)의 제출 요구를 받거나, 증인·참고인으로로서 출석이나 감정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이에 따라야 한다.
- 4) 국회증언감정법 제4조의2(서류등의 제출 거부 등에 대한 조치요구) 국회는 제2조에 따라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국가기관이 제4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이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때에는 본회의 또는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주무부장관에 대하여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해명하도록 하거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해명하게 하거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재량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어 출석·해명·징계 등 필요한 조치의 요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⁵⁾

또한, 국회증언감정법 제12조⁶⁾는 정당한 이유 없이 보고 또는 서류 제출 요구를 거절한 자에 대한 벌칙규정(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두고 있으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서류등의 제출을 한 자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이 없어 국회의 보고 및 서류등 제출 요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서류등 제출 거부 등에 대한 조치요구를 의무사항으로 변경하고, 거짓으로 보고 또는 서류등 제출을 한 자에 대한 벌칙규정(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신설함으로써, 국가가 안전의 심의 또는 국정감사·국정조사 등의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 국회의 보고 및 서류등 제출 요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회에 보고 또는 제출되는 내용

5) 제417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2024. 8. 14.)에서 김○○ 위원이 국회증언감정법 제4조의 2에 따라 위원회 의결로 다음 전체회의에 법무부장관을 출석시켜 자료제출 거부에 대한 해명을 듣고 해명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관계자에 대한 징계 요구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위원장에게 요청하였음. 위원장은 법무부장관 출석 건에 대하여 간사 간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실제 의결은 이루어지지 아니함.

6) **국회증언감정법 제12조(불출석 등의 죄)** 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 고의로 출석 요구서의 수령을 회피한 증인, 보고 또는 서류 제출 요구를 거절한 자,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이나 감정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을 방해하거나 검증을 방해한 자에 대하여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의 정확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서류등 제출 거부 등에 대한 조치요구의 의무사항 변경(안 제4조의2)의 경우, 현행 국회증언감정법상 보고 또는 서류등 제출 의무나 증인 등의 출석 의무와 관련하여 특정한 행위 또는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통상 의무 부과 형식(의무규정, ……하여야 한다)이 아닌 권한 부여 형식(재량규정, ……할 수 있다)을 취하고 있는 점,⁷⁾ 의사 관련 사안은 국회의 자율적인 협의를 거쳐 판단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어 보임.

둘째, 벌칙규정 신설 및 법정형(안 제12조제1항)의 경우, 국회의 보고 및 서류등 제출 요구 제도의 실효성 확보 측면, 불출석한 증인과 허위 진술한 증인은 처벌하는 데 비하여 보고 또는 서류 제출 요구에

7) 국회증언감정법 제4조(공무상 비밀에 관한 증언·서류등의 제출) ② 국회가 제1항 단서의 소명을 수락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폐회 중에는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국회가 요구한 증언 또는 서류등의 제출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친다는 취지의 국무총리의 성명(聲明)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조의2(서류등의 제출 거부 등에 대한 조치요구) 국회는 제2조에 따라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국가기관이 제4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이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때에는 본회의 또는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주무부장관에 대하여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해명하도록 하거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증인에 대한 동행명령) ①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증인에 대하여 지정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제10조(검증) ① 위원회는 안전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의결로 검증(檢證)할 수 있다.

제15조의2(수사기간 등) ④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수사기관이 제3항에 따른 수사기간 연장 없이 제1항에 따른 기간을 초과하여 수사 중이거나 제3항에 따라 연장된 수사기간을 초과하여 수사 중인 때에는 해당 수사기관의 장에 대하여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해명하도록 하거나 그 수사기관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수사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대한 거절은 처벌하면서도 거짓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은 처벌하고 있지 아니하여 벌칙규정 간 균형성·체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어 보임.

개정안은 거짓으로 보고 또는 서류등 제출을 한 자에 대한 법정형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 보고 또는 서류 제출 요구를 거절한 자와 동일하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는 현행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등의 죄 등 벌칙규정의 법정형(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제22대국회에서 재의 결과 부결⁸⁾⁹⁾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 허위 보고 또는 서류등 제출 등에 대한 벌칙규정의 법정형(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¹⁰⁾을 고려하여 적정한 법정형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¹¹⁾

8)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심의 및 재의 경과

구 분	운영위 의결	본회의 가결	정부 이송	정부 재의요구	본회의 재의의 건 부결
일 자	2024. 10. 31.	2024. 11. 27.	2024. 12. 6.	2024. 12. 19.	2025. 1. 8.

9) 참고로, 유사한 취지의 법률안에 대한 제20대국회 논의[제349회국회(임시회) 제1차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2017. 2. 21.)에서 거짓 보고 및 자료제출에 대하여 처벌규정을 신설할 경우, 정부가 국회의 고발을 의식하여 자료제출에 대하여 소극적으로 대응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음.

10) 정부는 재의요구서에서 허위 보고 또는 허위서류등 제출에 대한 법정형과 관련하여 징역형의 하한을 1년으로 정하고 있어 「형법」 제137조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점과 비교할 때 과중하여 과잉형벌의 소지가 있다고 밝힘.

11) 개정안에 따른 ‘3년 이하’의 징역은 양형상 ‘1개월 이상 3년 이하’로서, 부결 사례인 ‘1년 이상 5년 이하’가 양형상 ‘1년 이상 5년 이하’인 것과 비교 시 ‘경한’ 형벌임.

「형법」 제42조(징역 또는 금고의 기간) 징역 또는 금고는 무기 또는 유기로 하고 유기는 1개월 이상 30년 이하로 한다. 단,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대하여 형을 가중하는 때에는 50년까지로 한다.

제50조(형의 경중) ② 같은 종류의 형은 장기가 긴 것과 다액이 많은 것을 무거운 것으로 하고 장기 또는 다액이 같은 경우에는 단기가 긴 것과 소액이 많은 것을 무거운 것으로 한다.

[표-2] 현행 국회증언감정법 및 개정안상 벌칙규정

구성요건		법정형
제12조 불출석 등의 죄	(현행) <u>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u>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현행) 고의로 출석요구서의 수령을 회피한 증인	
	(현행) <u>보고 또는 서류 제출 요구를 거절한 자</u>	
	(현행)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 이나 감정인	
	(현행)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을 방해하거나 검증을 방해한 자	
	(개정안) <u>거짓으로 보고하거나 서류등을 제출한 자</u>	
제13조 국회 모욕의 죄	(현행) 증인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폭행·협박, 그 밖의 모욕적인 언행으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벌금
	(현행)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동행명령장의 수령을 회피한 때, 제3자로 하여금 동행명령장의 집행을 방해하도록 한 때	5년 이하 징역
제14조 위증 등의 죄	(현행) <u>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 (서면답변 포함)이나 감정을 하였을 때</u>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표-3] 재의 결과 부결된 개정안상 벌칙규정¹²⁾

구성요건		법정형
제12조 불출석 등의 죄	정당한 이유 없이 보고 또는 서류등의 제출을 방해한 자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제5조제8항에 따라 정보제공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정보를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송달기한 전까지 제공하지 아니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기통신사업자	
	정당한 이유 없이 <u>허위로 보고하거나 허위의 서류등을 제출한 자</u> , 제출 요구받은 서류등을 고의로 파기하거나 은닉한 자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벌금

12) 개정안에서 신설된 벌칙규정만 표시함.

문 의 처
02)6788-5017